

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정 태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서울특별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현 조례는 위촉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만 명시되어 있어,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